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28
----------	-------

발의연월일 : 2026. 8. 18.

발 의 자 : 정춘생 · 서왕진 · 이상식
강경숙 · 차규근 · 황운하
김준형 · 김재원 · 이해민
김선민 · 박은정 · 백선희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반면, 본투표는 서명이나 날인 등에 의존하고 있어 본인 확인 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

결을 거치도록 하며,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되,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51조제1항).
- 나.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수령할 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받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하도록 함(안 제157조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되,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7조제1항 중 “제시하고”를 “제시하여”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를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합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 ----- ----- ----- ----- ----- ----- ----- ----- ----- <u>. 이 경우 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되,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 ----- ----- ----- -----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⑧ (생략)

-----제시하여-----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
명한 후-----.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